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참고자료**	http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가스산업과 김용래 과장(2110-4894), 이병욱 사무관(2110-5464)

도시가스 품질기준 및 제3자검증시스템 도입

-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('12.1.26일 시행)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홍석우)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도시가스 품질기준의 법정화 및 제3자검증시스템('11.7.25 도시가스사업법 개정)의 시행을 위해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 시기·방법 등을 규정하는 **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**을 개정하여 **'12.1.26일부터 시행**한다고 밝힘

○ 금번 개정안은 세계적인 **천연가스의 저열량화 및 바이오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도시가스 진입 등 도시가스 원료의 다양화** 추세 속에 적정한 품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**소비자의 권익을 보호**하고 **유해가스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** 위한 것임.

○ 현재 도시가스품질기준이 **법률이 아닌** 천연가스를 주대상으로하는 **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서 관리**되고 있어, 현 체계로는 다양한 종류의 도시가스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동이용배관시설의 안전 및 사용자의 **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**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한 것임

* 품질검사대상 : 한국가스공사, LPG+Air 일반도시가스사업자, 도시가스충전(법 제25조의2) 사업자(스스로 제조하는 자에 한함), LNG직수입자

□ **주요 개정 내용으로는**

○ **(시행령)** 품질검사대상인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공급·소비하는 도시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을 **「한국가스안전공사」**로 정하고,

○ **(시행규칙)** 품질검사시기는 도시가스제조소 또는 최초 정압기지에서는 **월 1회 이상**, 그 외 정압기지 등 공급소, 충전소 및 수요가 시설에서는 **분기 1회 이상** 실시토록 하였으며,

-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공급·소비 및 품질검사 거부·기피 등에 따른 **행정처분*기준**을 마련하였음.

*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일에서 허가취소까지 탄력 적용(법제50조)

□ **금번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의 개정으로**

○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의 **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**하고,

○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도시가스 공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**최종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가스사고 예방**에 기여할 것으로 봄

□ **참고로,**

○ 국내 LP가스는 2002년부터 제3의 품질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미국, 영국 등 선진 외국*에서도 실시중

* 미국 캘리포니아·노스캐놀라이나 주의 경우 품질기준을 주 법률로 규정, 주정부기관인 공공설비위원회(PUC)에서 품질검사실시, 영국은 가스법(Gas Act 1986)에 품질기준을 명시

○ 또한,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석유정제 제품인 LP가스에 대한 품질검사기관은 **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**

* 현행 LPG 품질검사는 '02년부터 전국을 분할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 중

참고 자료

도시가스 품질제도 도입관련 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

□ 개정 배경

○ 도시가스 품질기준 법정화 및 제3자 검증시스템 도입을 위해 「도시가스사업법」이 개정('11.7.25 의원입법, '12.1.26 시행)되어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, 규칙 개정

□ 주요 개정내용

○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도시가스 품질검사 시기,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내 용(업체수)</th></tr>
<tr><td>법
('11.7.25, 공포)</td><td>품질검사 대상
(10개 업체)</td><td colspan="2">가스도매사업자(1), 일반도시가스사업자(4, 제조에 한함),
도시가스충전사업자(2, 제조에 한함), 자가소비용직수입자(3)</td></tr>
<tr><td>시행령
('12.1.17, 공포)</td><td>검사기관</td><td colspan="2">한국가스안전공사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시행규칙
('12.1.26, 공포)</td><td rowspan="2">검사장소 및 주기</td><td>도시가스제조소 또는 최초 정압기지</td><td>월 1회</td></tr>
<tr><td>정압기지(최초제외)</td><td>분기 1회</td></tr>
<tr><td>행정처분 기준</td><td colspan="2">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제한
: 3일~허가취소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* 도시가스충전사업자(2, 제조에 한함):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, 바이오메탄 서울
* 자가소비용직수입자(3): 포스코, K-파워(SK), GS칼텍스</td></tr>
</table>

□ 기대 효과

○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**도시가스사업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**

○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도시가스 공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**최종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가스사고 예방**에 기여